

학위논문 제출자격(졸업요건) 및 제출과정 안내

◎ 학위논문 제출자격(졸업요건)

등록	수업연한에 따라 5학기 등록을 필한자(단, 법무대학원 내규 제44조(수료 및 졸업)에 따라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)
취득학점	30학점 취득한 자 (법무대학원 내규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28학점)
평점	취득학점의 평균 백분위점수가 80점 이상인 자
학위자격시험	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◎ 학위청구논문 제출과정



◎ 학위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

1. 관련근거 : 법무대학원 내규 제38조(학위지도교수 배정)

2. 학위지도교수 배정

가.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의사와 전공을 고려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
나. 학위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 대학교

의 동급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다. 학위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은 학위지도교수로 부터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3. 학위지도교수 변경

- 학위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 - 가.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
 - 나. 1년을 초과하여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지도가 논문지도가 어려운 경우
 - 다.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주임교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